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도시계획위원회 상정(안) 보고 [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 - 삼성동 91-28외 2필지, *****]

국제교류복합지구(코엑스~종합운동장 일대) 지구단위계획구역(삼성동 91-28외 2필지)내 「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 용적률 완화 적용 등을 통해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고자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상정 하고자 합니다.

□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

구분	계 획 내 용				비 고
	기정		변경		
위치	삼성동 91-28, 29, 30		삼성동 91-28, 29, 30		
면적	680.8㎡		680.8㎡		
가구 및 획지	삼성동 91-28	공동개발 지정	삼성동 91-28	공동개발 지정	지정 및 단독 → 지정
	삼성동 91-29		삼성동 91-29		
	삼성동 91-30	단독개발	삼성동 91-30		
건축물의 용도 (지정용도)	-		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		삼성동 91-28, 91-29, 91-30
용적률 (상한용적률)	허용용적률×(1+1.3×가중치×α) 이내		허용용적률×(1+1.3×가중치×α)+관광숙박 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이내 ※ 상한용적률 : 974.06% 적용		
교통처리계획	삼성동 91-30번지 전면부 차량출입허용구간		삼성동 91-30번지 전면부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변경		
그 외 사항	기재생략		변경없음		

첨부 : 상정안(국제교류복합지구, 삼성동 91-28외 2필지) 1부.

